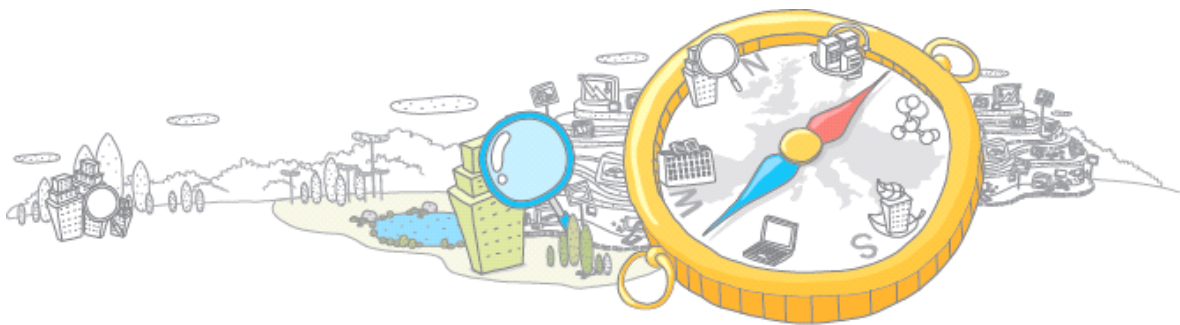


EU REACH 중소기업 기준 및 감면 혜택 증빙자료



| | | | |
|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고서 번호 | BSC Report 311-23-011 | 정보분류 등급 | 경고, 예측, 일반 |
| 규제분류 | 화학물질 | 적용산업 | 화학 |
| 키워드 | EU REACH, ECHA, 중소기업(SME), 기업 규모 기준, ECHA 관납료 감면, 기업 규모 증빙서류, REACH 감면 | | |
| 작성자 | 김선욱 연구원 손다예 팀장* | 연락처 | lifecat@kncpc.re.kr 02-2183-1570 |

* 시알시피 주식회사(dysohn@kcrpc.com)

<요약>

- EU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기업(Medium enterprise), 소기업(Small enterprise), 극소기업(Micro enterprise)로 분류
 - 기업 규모 기준은 직원 수와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상의 총액으로 판단하며 기업 규모 산정 시 기업 종류* 고려 필요
 - * 자율(autonomous), 협력(partner) 및 연결(linked) 기업
- EU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EU REACH 등록,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 (PPORD) 신고, 허가, 변경 등록 등 제출 시 관납료 감면 혜택
 - EU 역내 유일대리인(OR)을 선임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 업체의 기업 규모가 EU 기준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관납료 감면 가능
- EU REACH 의무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증빙 시 유럽화학물질청(ECHA)에 기업 소유권 구조, 회계 및 직원 수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
 - ECHA는 중소기업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중소기업 규모 검증을 진행하고, 검증 진행 중 기업규모 오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담금 부과

<목차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개요 | 1 |
| 2. 기업 규모 기준 및 산정 방법 | 1 |
| 2.1. EU 중소기업의 기업 규모 기준 및 정의 | 1 |
| 2.2. EU 중소기업의 기업 규모 산정 방법 | 3 |
| 3. 중소기업의 EU REACH 증빙 | 6 |
| 3.1. 중소기업 감면 혜택 | 6 |
| 3.2. 중소기업 증빙 요구 서류 | 8 |
| 3.3. 중소기업 규모 오제출 시 대응 | 9 |
| 4. 산업영향 및 대응방안 | 10 |
| 5. 참고자료 | 10 |

1. 개요

- EU의 전체 기업 중 90% 가량은 중소기업(SMEs : Small and Medium-sized Enterprises)이 차지
 - EU 내 일자리 창출, 경제 성장 및 사회 안정성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큼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집중
- 유럽화학물질청(ECHA : European Chemicals Agency)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「화학물질의 등록, 평가, 허가 및 제한 규정(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, 이하 'REACH'라고 한다.)」에 따른 중소기업 관납료를 감면
 - REACH 등록 시 표준기업(non-SMEs)의 관납료는 최소 €1,304에서 최대 €33,699이나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당 금액 감면 가능
 - EU 역내 유일대리인(OR : Only Representative)을 선임하는 국내 업체 또한 국내 업체의 기업 규모에 따라 EU의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관납료 감면 혜택이 부여
 - 따라서, 국내 업체는 EU REACH 대응에 앞서 EU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검토하고 관납료 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권장

2. 기업 규모 기준 및 산정 방법

2.1. EU 중소기업의 기업 규모 기준 및 정의

2.1.1. 기업 규모 기준

- EU는 중소기업 규모를 중기업(Medium enterprise), 소기업(Small enterprise) 및 극소 기업(Micro enterprise)으로 분류하며 <표 1>의 기준을 따름

<표 1> EU 중소기업 기업 규모 기준

| 구분 | 직원 수 | 연간 매출액 | or |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중기업(Medium) | 250명 미만 | €50,000,000 미만 | | €43,000,000 미만 |
| 소기업(Small) | 50명 미만 | €10,000,000 미만 | | €10,000,000 미만 |
| 극소기업(Micro) | 10명 미만 | €2,000,000 미만 | | €2,000,000 미만 |

- 직원 수 기준은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 및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 기준은 둘 중 1개 이상 만족 필요
- 다양한 경제활동(제조, 무역 및 유통 등)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과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 중 1개 기준만 만족해도 인정
 - 무역, 유통 업계 종사 기업의 경우 제조업체보다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
- 기업 규모에 대한 판단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 연 단위로 계산하며 결산일로부터 산정
 - 결산일에 기업의 직원 수,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각 중소기업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며 2회 연속 회계 기간 동안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위 상실
 - 예) '23년 6월 기업규모 판단 시, 회계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업체는 '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만약 '22년 12월 31일, '21년 12월 31일 연속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표준기업(non-SMEs)으로 판단

<표 2> 기업 규모의 판단(예시)

| 구분 | N(기준연도) | N-1 | N-2 | 중소기업 상태 |
|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1 | 중소기업 | 표준기업 | 표준기업 | 표준기업 |
| 2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| 표준기업 | 중소기업 |
| 3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|
| 4 | 중소기업 | 표준기업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|
| 5 | 표준기업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|
| 6 | 표준기업 | 표준기업 | 중소기업 | 표준기업 |
| 7 | 표준기업 | 중소기업 | 표준기업 | 표준기업 |
| 8 | 표준기업 | 표준기업 | 표준기업 | 표준기업 |

- 아직 결산 승인을 받지 못한 신설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중 산정된 선의의 추정치(bona fide estimate)에 따라 기업 규모 판단

2.1.2. 기준 항목별 정의

- (직원 수) 직원 수 산정 시 풀타임, 파트타임, 임시 및 계절 직원을 모두 포함하며 <표 3>과 같이 포함과 미포함 기준을 구분

<표 3> 직원 수 포함 여부 구분

| 직원 수에 포함 | 직원 수에 미 포함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 - 기업에 파견되어 국내법에 따라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(임시 직원 포함) - 기업 소유경영자 - 기업의 정기적 활동에 참여하고,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는 파트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업 훈련을 받으며 견습 또는 직업 훈련 계약을 맺은 견습생 또는 학생 -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 |

- (연간 매출액) 해당 연도 동안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 범위 내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입을 계산
 -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간접세들은 미포함
- (연간 대차대조표 총액) 기업의 주요 자산 가치로 판단

2.2. EU 중소기업의 기업 규모 산정 방법

2.2.1. 기업의 종류

- 기업 규모 산정 시 기업의 종류에 따라 규모 산정 방식이 상이하며 기업의 종류는 자율 기업(autonomous enterprise), 협력 기업(partner enterprise), 연결 기업(linked enterprise)으로 구분
- (자율 기업) 협력 기업 또는 연결 기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업을 의미
- (협력 기업)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25% 이상 50% 미만 소유하는 관계를 가지는 기업을 의미
 - 단, <표 4>의 투자자가 자본 또는 의결권을 25% 이상 50% 미만 소유하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 협력 기업이 아닌 자율 기업으로 분류

<표 4> 협력 기업의 예외

| 구분 | 내용 |
|----|--|
| 1 | 공공투자기관, 벤처 캐피탈 회사, 비상장회사에 정기적 벤처 캐피탈 투자 활동을 통해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(비즈니스 엔젤)(단, 한 기업 내 비즈니스 엔젤의 총 투자금액이 €1,250,000 이하) |
| 2 |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센터 |
| 3 | 지역발전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 |
| 4 | 연간 예산 €10,000,000 미만, 거주민 5,0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당국 |

- <표 4>의 투자자가 자본 또는 의결권을 50% 이상 소유하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미 해당

- <표 4>에서 언급된 투자자를 제외한 한 개 또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자본이나 의결권을 25% 이상 직·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미 해당
- 이는 민간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타 기업에 비해 공공 소유인 기업이 특정 이점(특히 재정적 이점)을 가질 수 있고, 공공 기관의 관련 직원 및 회계 자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
- (연결 기업)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본이나 의결권을 50% 이상 소유하며, 서로 <표 5>의 관계를 가지는 기업을 의미

<표 5> 연결 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| 구분 | 내용 |
|----|--|
| 1 |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기업 구성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기업 |
| 2 | 다른 기업의 행정, 경영 또는 감독 기관의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업 |
| 3 | 다른 기업과 체결한 계약, 각서의 조항,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기업 |
| 4 |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기업 구성원으로서, 그 외 주주 또는 기업 구성원의 동의하에 주주 또는 기업 구성원 의결권의 과반수를 단독으로 통제하는 기업 |

-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과 <표 5>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연결 기업으로 분류
- 동일한 시장 또는 인접한 시장(직접적인 전·후방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)에 참여하는 자연인 또는 자연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<표 5>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연결 기업으로 분류

2.2.2. 기업의 종류별 기업 규모 산정 방법

- (자율 기업) 해당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 규모 계산
- (협력 기업) 해당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와 더불어 협력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비율(자본, 의결권을 모두 가진 경우 둘 중 더 높은 비율 선택) 만큼의 직원 수 및 회계자료를 합산하여 기업 규모 계산
- 예) 협력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이 30%인 경우, 원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 값과 협력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 값에 의결권 비율 30%를 곱한 값을 합산한 규모로 판단

<표 6> 협력기업 규모 산정 방법 예시

| case | 기업 규모 판단 방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협력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 30% | 원 기업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 + (협력 기업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) × 30% |

- 다수의 협력 기업이 존재할 경우 원 기업과 각 협력 기업 간에 <표 6>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
 - 협력 기업이 다른 기업과 협력(partner) 관계인 경우, 그 협력 기업의 규모는 미 고려
 - 협력 기업이 다른 기업과 연결(linked) 관계인 경우, 그 연결 기업의 규모 또한 함께 고려 필요
- (연결 기업) 해당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와 더불어 연결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를 합산하여 기업 규모 계산
- 예) 연결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이 51%인 경우, 원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 값과 연결 기업의 직원 수 및 회계 자료 값을 합산

<표 7> 연결기업 규모 산정 방법 예시 ①

| case | 기업 규모 판단 방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연결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 50% 이상 | 원 기업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 + (연결 기업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) |

- 예) 연결 기업(A)이 다른 기업과 협력(B) 또는 연결(C) 관계인 경우, 연결 관계의 기업 규모 전체와 협력 관계의 기업 규모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만큼을 합산하여 계산

<표 8> 연결기업 규모 산정 방법 예시 ②

| case | 기업 규모 판단 방법 |
|--|--|
| 연결기업(A)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 50% 이상 & 연결기업(A)의 협력기업(B)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 30% | 원 기업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 + (연결 기업(A)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) + (연결 기업(A)의 협력 기업(B)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) × 30% |
| 연결기업(A)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 50% 이상 & 연결기업(A)의 연결기업(C)의 자본 또는 의결권 비율 50% 이상 | 원 기업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 + (연결 기업(A)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) + (연결 기업(A)의 연결 기업(C)의 직원수 및 회계자료 값) |

- 단, 기업 간 연결채무제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채무제표 규모로 계산

3. 중소기업의 EU REACH 증빙

3.1. 중소기업 감면 혜택

- EU REACH 등록 서류 제출 시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 별 등록 톤수 범위, 제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납료가 감면
 - 중기업은 € 456 ~ € 11,795 감면
 - 소기업은 € 847 ~ € 21,904 감면
 - 극소기업은 € 1,239 ~ € 32,014 감면

<표 9> EU REACH 등록 시 ECHA 관납료

(단위: €)

| 구분 | | 1-10톤 | 10-100톤 | 100-1000톤 | 1,000톤 이상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표준기업 (Non-SMEs) | 개별제출 | 1,739 | 4,674 | 12,501 | 33,699 |
| | 공동제출 | 1,304 | 3,506 | 9,376 | 25,274 |
| 중기업 (Medium) | 개별제출 | 1,131 | 3,038 | 8,126 | 21,904 |
| | 공동제출 | 848 | 2,279 | 6,094 | 16,428 |
| 소기업 (Small) | 개별제출 | 609 | 1,636 | 4,375 | 11,795 |
| | 공동제출 | 457 | 1,227 | 3,282 | 8,846 |
| 극소기업 (Micro) | 개별제출 | 87 | 234 | 625 | 1,685 |
| | 공동제출 | 65 | 175 | 469 | 1,264 |

- EU REACH 등록 외에도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(PPORD : Product and Process Ori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) 신고, 허가, 변경 등록 또한 중소기업의 관납료를 감면

<표 10> EU REACH PPORD 신고 시 ECHA 관납료

(단위: €)

| 구분 | PPORD 신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표준기업 (Non-SMEs) | 544 |
| 중기업 (Medium) | 353 |
| 소기업 (Small) | 190 |
| 극소기업 (Micro) | 27 |

<표 11> EU REACH 허가 시 ECHA 관납료

(단위: €)

| 구분 | 기본 비용 | 물질 당 추가금액 | 용도 당 추가금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표준기업 (Non-SMEs) | 54,100 | 10,820 | 48,690 |
| 중기업 (Medium) | 40,575 | 8,115 | 36,518 |
| 소기업 (Small) | 24,345 | 4,869 | 21,911 |
| 극소기업 (Micro) | 5,410 | 1,082 | 4,869 |

<표 12> EU REACH 변경등록(톤수 변경) 시 ECHA 관납료

(단위: €)

| 구분 | | 1~10톤 에서 10~100 톤으로 변경 | 1~10톤 에서 100~1,000 톤으로 변경 | 1~10톤 에서 1,000톤 이상 변경 | 10~100톤 에서 100~1,000 톤으로 변경 | 1~10톤 에서 1,000톤 이상 변경 | 100~1,000 톤에서 1,000톤 이상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준기업 (Non-SMEs) | 개별제출 | 2,935 | 10,762 | 31,960 | 7,827 | 29,025 | 21,198 |
| | 공동제출 | 2,201 | 8,071 | 23,970 | 5,870 | 21,768 | 15,898 |
| 중기업 (Medium) | 개별제출 | 1,908 | 6,995 | 20,774 | 5,087 | 18,886 | 13,779 |
| | 공동제출 | 1,431 | 5,246 | 15,580 | 3,816 | 14,150 | 10,334 |
| 소기업 (Small) | 개별제출 | 1,027 | 3,767 | 11,186 | 2,739 | 10,159 | 7,419 |
| | 공동제출 | 770 | 2,825 | 8,389 | 2,055 | 7,619 | 5,564 |
| 극소기업 (Micro) | 개별제출 | 147 | 538 | 1,598 | 391 | 1,451 | 1,060 |
| | 공동제출 | 110 | 404 | 1,198 | 294 | 1,088 | 795 |

- 따라서, EU REACH 대응 시 적절한 기업 규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관납료를 감면받는 것이 중소기업에 유리
- ECHA는 중소기업 관납료 감면을 신청한 업체의 기업 규모를 검증할 책임을 보유
- REACH-IT 시스템*에 기업 규모를 극소, 소 또는 중기업으로 등록한 후 관납료 감면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ECHA에서 불시에 중소기업 규모 검증을 진행
- * REACH-IT 시스템은 데이터 및 서류를 안전하게 제출,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해 산업계, 회원국 관할 당국 및 ECHA를 지원하는 중앙 IT 시스템¹⁾

1) <https://reach-it.echa.europa.eu/reach/>

3.2. 중소기업 증빙 요구 서류

- EU REACH의 경우 REACH-IT 시스템 상의 서류(등록, 등록 업데이트 및 신고 등) 제출 연도를 기준연도로 지정
- ECHA의 중소기업 규모 검증 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직·간접적 연결 및 협력 기업에 대한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하며 기업 소유권 구조, 기업 회계 관련 및 기업 직원 수 증빙 서류를 요구
- **(기업 소유권 구조 증빙 서류)** REACH-IT 시스템 상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제출
 - 유럽위원회 권고 2003/361/EC²⁾ 부록 제3조에 따라 주식, 의결권 또는 협력 및 연결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영향력 행사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
 - 회사의 주주에 대한 증빙서류로 상업등기부, 정관, 법인설립 문서, 각서,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 有
- **(기업 회계 관련 증빙 서류)** REACH-IT 시스템 상 서류 제출 시점 직전의 2개 연도 서류를 제출
 - 유럽위원회 권고 2003/361/EC 부록 제3조,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 회계 재무제표 사본 및 그 주간, 연간 보고 또는 연간 세금 신고서 등 제출
- **(기업 직원 수 증빙 서류)** REACH-IT 시스템 상 서류 제출 시점 직전의 2개 연도 서류 제출
 - 유럽위원회 권고 2003/361/EC 부록 제5조에 따라 연간 작업 단위 (annual work units) 수에 상응하는 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관*의 공식 인증서 또는 정보 제출
 - * 세무서, 국세청, 보험청, 노동청, 통계청, 건강보험기관, 민간건강보험기관 등이 해당
 - 직원 수 관련 정보가 감사재무제표 주식 또는 연간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

2)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/361/EC on SME definition

3.3. 중소기업 규모 오제출 시 대응

- REACH-IT 시스템에 기업 규모를 극소, 소 또는 중기업으로 등록한 후 관납료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기업 규모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필요
- **(검증 이전 확인)** ECHA의 기업 규모 검증 이전 기업 규모가 잘못된 것을 확인한 경우, ECHA 헬프데스크 문의 절차를 거쳐 기업 규모를 수정하고, 기업 규모 수정에 따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관납료 차액을 지불
 - 이 경우 ECHA에서 부과하는 부담금(administrative charge) 면피 가능
- **(검증 과정 확인)** ECHA의 기업 규모 검증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경우, 실제 확인된 기업 규모가 제출 시점의 기업 규모보다 크다면 추가 지불이 필요한 관납료 차액과 더불어 ECHA에서 부담금을 청구
 - 단, ECHA에서 기업 규모 검증을 위해 기업에 연락을 취한 후 해당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업 규모를 수정하면 부담금의 50% 감면
 - 따라서, ECHA의 기업 규모 검증이 시작된 후 기업 측에서 기업 규모 오제출 사실을 확인했다면 21일 이내에 ECHA에 '잘못된 기업 규모 선언(Declaration of wrong size)'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
 - ECHA는 기업 규모에 따라 <표 13>과 같이 오제출 시 부담금을 적용

<표 13> ECHA 기업 규모 오제출 시 부담금

| 기업 규모 | 오제출 상황 | 부담금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준기업 (non-SMEs) | 표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| € 19,900 또는 금전적 이득*의 2.5배 중 낮은 금액 |
| 중기업 | 중기업이 소기업 또는 극소기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| € 13,900 또는 금전적 이득*의 2.5배 중 낮은 금액 |
| 소기업 | 소기업이 극소기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| € 7,960 또는 금전적 이득*의 2.5배 중 낮은 금액 |

* 금전적 이득: 기업 규모 오제출로 지불한 관납료 금액과 기업 규모 올바르게 정정 시 발생하는 관납료 금액의 차액

4. 산업영향 및 대응방안

- EU REACH의 중소기업 관납료 감면은 수출을 위해 EU REACH 등록 및 신고 등을 진행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
 - 따라서, 국내 중소기업은 EU REACH 등록 준비 시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
- 다만, 기업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ECHA의 부담금 청구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규모 계산 시 유의 필요
 -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및 연결 기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하고, 협력 또는 연결 관계에 따라 계산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계산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필요
- EU REACH 중소기업 인정 기준연도는 REACH-IT 시스템 상의 서류 제출 시점이므로 여러 해에 걸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각 제출 시점에 기업 규모가 변동되었는지 검토 필요
 - 다만, 기업 규모 기준을 넘는 즉시 해당 중소기업의 지위를 잃지 않고, 회계연도 2년 연속 기준을 넘을 때 기업 규모가 변동되는 점에 유의

5. 참고자료

- 유럽화학물질관리청(ECHA) 홈페이지
 - <https://echa.europa.eu/home>
- Regulation (EC) No 1907/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, 2006.
- Regulation (EC) No 340/2008 on the fees and charges payable to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pursuant to Regulation (EC) No 1907/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(REACH), 2008.
-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/361/EC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, small and medium-sized enterprises.
- European Commission, User guide to the SME definition, 2015.

- 주의 -

1. 본 분석보고서의 저작권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. 본 분석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서면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도 재생산, 배포, 변경할 수 없습니다.
2. 본 분석보고서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내용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“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11-23-011”를 표시해야 합니다.
3. 내용 전체를 전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4. 본 분석보고서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